

사전 감사대상

문서번호	자자 5011- 448	감 사 장	
처리기한	1997. . .	보존기간	이 사 부총재 총 재 출장증 후 연 26
기 안	1997. 2. 1.	영구	
발 신	1997. . .		
과 장 부 장			
13 24		28 대 권	

기 안 자	정 후 식	합	(법규과)기획부장 10	전 결 근 거	직무권한 분류표 제1장 제1절 제1항 제4호
소 속	자금부 자금과	의			
직 위	조사역 전화 4492				

수 신
참 조

제 목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붙임1)과 같이 검토하고 (붙임2)와 같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요약>

- | 현 행 | 개 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규모별, 자금별 달러당 융자 단가 설정 평균융자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 소 기 업 84.7% (720원) 비계열대기업 52.9% (450원) ()내는 무역금융 융자단가 * 97.1월 평균환율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규모별 달러당 융자단가를 전월 평균기준환율의 일정비율로 연동하고 자금별 차등제도는 폐지 융자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 소 기 업 90% (765원) 비계열대기업 60% (510원) |

- 붙 임 1.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산정방법 개선방안 1부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1부. 끝.

사본수신처

한국은행 행내 021-10(80.11.19) ()

(결재서식)

발	업무	필요	공
송	기록	불요	람

(붙임 1)

貿易金融 融資單價의 算定方法 改善方案

1. 現 況

— 현행 무역금융은 수출금액 미화 1 「달러」당 원화 融資金額(달러당 융자단가로 지칭)을 곱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자금의 성격과 지원목적에 따라 資金別로 差等 運用

○ 중소기업의 경우 달러당 平均 融資單價는 720원이며 비계열대기업의 평균 융자단가는 450원임

2. 問題點

— 최근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換率變動幅의 擴大措置*로 일중 ± 19.4 원(1.31 기준)이나 크게 변동할 수 있게 되어 달러당 융자단가의 수시 변경없이 무역금융 융자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곤란

* 90.3월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당시 일중환율 변동폭은 기준환율의 $\pm 0.4\%$
→ 94.11.1이후 $\pm 1.5\%$ → 95.12.1이후 $\pm 2.25\%$ 로 확대

** 융자비율(%) = (융자단가 /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times 100$

— 또한 무역금융 융자단가가 환율이 큰 폭으로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6.8.5일 이후 固定되어 있어 이의 조정필요

* 96.8.5(달러당 813.6원)~97.1.31일(달러당 861.3원)중 5.5%절하되어 무역금융의 평균 융자비율이 지난 96.8월 융자단가 인상시 중소기업 88.5%, 비계열대기업 55.3%에서 97. 1.31일 현재 중소기업 83.6%, 비계열대기업 52.2%로 하락

3. 改善方案

— 달러당 용자단가를 전월 平均基準換率의 일정비율로 連動하는 方式으로 변경

- 아울러 무역금융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자금별 용자비율 차등제도를 폐지하되 중소기업과 비계열대기업간의 용자비율 차등조치는 계속 유지

현	행	개	선
기업규모별, 자금별 달러당 용자단가 설정	→	기업규모별 달러당 용자단가를 전월 평균기준환율의 일정비율로 연동하 고 자금별 차등제도는 폐지	

- 적용 용자비율은 96.8월 용자단가 인상시의 달러당 평균용자비율 보다 다소
상향 조정(중소기업 88.5% → 90.0%, 비계열대기업 55.3% → 60.0%)

무역금융 용자비율 조정(안)

		(%, 원/달러)			
		현		개 정 (안)	
		중소기업	비계열대기업	중소기업	비계열대기업
생 산 자 금	80.0 <83.6> (680)	47.1 <49.2> (400)	90	60	
원 자 재 금 용	86.9 <90.7> (738)	59.1 <62.8> (502)	90	60	
원자재수입자금	62.4 <65.2> (530)	37.7 <39.3> (320)	-	-	
원자재구매자금	89.4 <93.4> (760)	61.2 <65.2> (520)	-	-	
포 괄 금 용	84.7 <88.5> (720)	52.9 <55.3> (450)	90	60	
평균 용자비율	84.7 <88.5> (720)	52.9 <55.3> (450)	90 (765)	60 (510)	

()내는 달러당 용자단가(원)

< >내는 96. 8월 용자단가 인상시 용자비율

* 97. 1월 평균환율(849.88원/달러) 기준

< 참고 1 >

무역금융 융자비율 변동추이

(원/달러)

	93.4월		95.4월		96.8월		97.1월	
	중소기업	대 기업	중소기업	대 기업	중소기업	대 기업	중소기업	대 기업
평균융자단가	700	400	700	400	720	450	720	450
평균융자비율	88.0%	50.3%	91.9%	52.5%	88.5%	55.3%	84.7%	52.9%

< 참고 2 >

무역금융 취급실적 추이(잔액기준)

(억 원)

	93	94	95	96.8	96.9	96.10	96.11
일반수출입금융	24,605	26,959	28,253	27,804	27,443	27,652	27,484
생 산 자 금	5,346	5,659	5,821	6,145	6,212	6,204	6,045
원 자 재 금 용	18,088	20,086	21,069	20,326	19,860	20,063	20,112
원자재수입자금	2,748	2,822	2,237	1,943	1,788	1,870	1,898
원자재구매자금	15,340	17,264	18,832	18,383	18,072	18,193	18,214
포 괄 금 용	1,171	1,214	1,363	1,334	1,371	1,385	1,327
기 타	128	153	215	184	186	209	206
계	24,734	27,112	28,469	27,988	27,629	27,862	27,690

* 건설·용역수출금융 및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 1 조 ~ 제 6 조 (생략)	제 1 조 ~ 제 6 조 (현행과 같음)	
제2장 일반수출입금융	제2장 일반수출입금융	
제 7 조 ~ 제 8 조 (생략)	제 7 조 ~ 제 8 조 (현행과 같음)	
제 9 조(융자금의 구분) ① 일반수출입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급(이하 “용도별 금융”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 9 조(융자금의 구분) ① 일반수출입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급(이하 “용도별 금융”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용 수입원자재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또는 유통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원자재수입자금”이라 한다)	2. 수출용 원자재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원자재금융”이라 한다)	-원자재수입자금과 원자재구매자금을 원자재금융으로 통합
3.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원자재구매자금”이라 한다)	(삭제)	-제2호 내용에 통합적용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 10 조 ~ 제 11 조 (생략)	제 10 조 ~ 제 11 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2 조(융자한도) ①~③ (생 략) ④ 실적기준으로 원자재수입자금 및 원자재구매자금(이하 "원자재 금융"이라 한다)을 수혜하는 업체(이하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수혜 업체"라 한다)에 대한 융자한도는 융자취급승인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에 1.5를 곱한 금액이나 융자취급승인 9개월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에 1.5를 곱한 금액에 당해 업체의 평균원자재의존율을 곱한 금액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1/3 해당액에 당해 업체의 평균원자재의존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위 한도중 융자신청 9개월전 수출실적 기준한도 이용업체는 향후 1년간 동 기준한도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⑧ (생 략) 제 13 조 (생 략) 제 14 조 (융자금액) ① 용도별 금융의 융자금액은 제12조에서 정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생산자금의 융자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가득외화액 또는 실적기준 생산자금 융자한도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680원을 곱한 금액 범위 내, 비계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0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금액은 수입어음외화금액,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 포함)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53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계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제 12 조(융자한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실적기준으로 원자재금융을 수혜하는 업체(이하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라 한다)에 대한 융자한도는 융자취급승인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에 1.5를 곱한 금액이나 융자취급승인 9개월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에 1.5를 곱한 금액에 당해 업체의 평균원자재의존율을 곱한 금액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1/3 해당액에 당해 업체의 평균원자재의존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위 한도중 융자신청 9개월전 수출실적 기준한도 이용업체는 향후 1년간 동 기준한도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⑧ (현행과 같음) 제 13 조 (현행과 같음) 제 14 조 (융자금액) 용도별 금융 및 포괄금융의 융자금액은 제 12조에서 정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별로 다음 각호의 대상 금액에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환율의 융자취급일 전월 평균환율(이하 "평균기준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90% 범위내, 비계열대기업의 경우 60% 범위내로 산정한다. 1. 생산자금의 융자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가득외화액 또는 실적기준 생산자금 융자한도의 외화금액 2. 원자재금융의 융자금액은 수입어음외화금액,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 포함)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원자재금융으로의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융자비율에 의한 융자금액 산정방식 적용 -융자비율에 의한 융자금액 산정방식적용에 따른 조문정비 -원자재수입자금 및 원자재구매자금을 원자재금융으로 통합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도 원자재금융 산정방식 적용

현행	개정(안)	비고
3. 원자재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6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계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5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다만,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의 융자금액은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53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계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3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② 포괄금융의 융자금액은 제12조 제7항의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용장기준금융 :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자사제품 수출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계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5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 실적기준금융 : 수출실적확인서의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경우 미화 1「달러」당 72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비계열대기업의 경우 미화 1「달러」당 45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제 15 조(융자시기) 융자는 다음과 같이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금융 및 실적기준 생산자금의 경우에는 소정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수시로 취급할 수 있다. 1. (생략)	(삭제) 3. 포괄금융의 융자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자사제품 수출금액 또는 수출실적확인서의 외화금액 제 15 조(융자시기) 융자는 다음과 같이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금융 및 실적기준 생산자금의 경우에는 소정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수시로 취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제2호 내용에 통합적용 -융자비율에 의한 융자금액 산정방식 적용에 따른 조항 및 조문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 원자재수입자금의 용자는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 다만, 수입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의 동 운임분은 동 운임을 지급할 때 용자취급 할 수 있다. 3. 원자재구매자금의 용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 제 16 조(용자기간) ① 용자기간은 신용장기준금융의 경우 180일, 실적기준금융의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가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수입자금의 용자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② 생산자금 및 원자재수입자금의 용자기간은 용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원자재구매자금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원자재수입자금의 경우 화물선회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동 화물선회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 ④ (생 략) 제 17 조(용자취급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임가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당해 어음결제를 위한 원자재구매자금을 취급할 수 없다.	2. 원자재금융의 용자는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 다만, 수입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의 동 운임분은 동 운임을 지급할 때 용자취급 할 수 있다. (삭 제) 제 16 조(용자기간) ① 용자기간은 신용장기준금융의 경우 180일, 실적기준금융의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실적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가 표준항해일수 10일 이내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금융의 용자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② 생산자금 및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한 원자재금융의 용자기간은 용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금융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한 원자재금융의 경우 화물선회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해 수입물품을 영수할 때에는 동 화물선회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 17 조(용자취급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가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당해 어음결제를 위한 원자재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	-원자재금융으로의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제2호 내용에 통합적용 -원자재금융으로의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원자재금융으로의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외국환관리규정 개정내용반영 ○통침(자자50)12-10, 1997.1.9)으로 기통보 -원자재금융으로의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현행	개정 (안)	비고
제 18 조 (생략) 제3장 건설·용역수출금융	제 18 조 (현행과 같음) 제3장 건설·용역수출금융	
제 19 조 ~ 제 20 조 (생략)	제 19 조 ~ 제 20 조 (현행과 같음)	
제 21 조(융자금액) 융자금액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 21 조(융자금액) 융자금액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금액에 평균기준환율을 곱한 금액의 90% 범위 내로 산정한다.	융자비율에 의한 융자금액 산정방식 적용
1. 생산자금의 융자금액은 당해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서의 가득외화액 또는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 융자한도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미화 1「달러」당 68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1. 생산자금의 융자금액은 당해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서의 가득외화액 또는 실적기준 건설·용역수출금융 융자한도의 외화금액	융자비율에 의한 융자금액 산정방식 적용에 따른 조문정비
2.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금액은 수입어음외화금액,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 포함) 또는 내국신용장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미화 1「달러」당 53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2. 원자재금융의 융자금액은 수입어음외화금액,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 포함) 또는 내국신용장이음의 외화금액	원자재수입자금 및 원자재구매자금을 원자재금융으로 통합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도 원자재금융 산정방식 적용
3. 원자재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내국신용장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미화 1「달러」당 76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다만,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의 융자금액은 내국신용장이음의 외화금액에 대하여 미화 1「달러」당 530원을 곱한 금액 범위내	(삭제)	제2호 내용에 통합적용

현행	개정 (안)	비고
제 22 조(용자기간) ① (생략) ② 생산자금 및 원자재수입자금의 용자기간은 용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원자재구매자금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원자재수입자금의 경우 화물선회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동 화물선회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인수일로부터 각각 기산한다. ③ ~ ④ (생략) 제 23 조 ~ 제 37 조 (생략) 9/6. 12. 30. (신설)	제 22 조(용자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생산자금 및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한 원자재금융의 용자기간은 용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금융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위한 원자재금융의 경우 화물선회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해 수입물품을 영수할 때에는 동 화물선회보증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 23 조 ~ 제 37 조 (현행과 같음) 부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7. 2. 15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동 용자금의 완제시까지 종전 세칙을 계속 적용한다.	-원자재금융으로의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 -외국환관리규정 개정내용반영 ○통칙(자자5012-10, 1997.1.9)으로 기통보 -시행일 및 경과조치 명시